

#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방식 개선 ]

## ■ 100억원 미만 수의계약 평점 상향

시장가격에 근접한 공사비가 산정 되도록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방식이 개선되고 PQ와 터키 등 입찰 및 계약제도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며 수의계약도 더욱 엄격히 제한된다.

이와 함께 G2B내에 고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조달업체에 각종 고급정보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공되고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가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UN공공서비스상 수상을 계기로 그 동안 추진해온 각종 제도개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참여정부 조달 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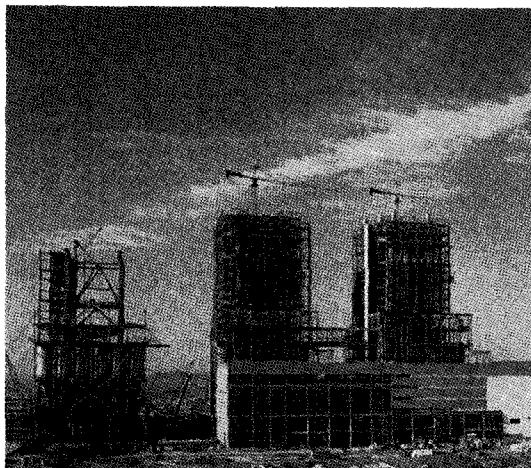
지난 6월 4일 이후 직원 토론회 및 연찬회와 고객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개혁방안에는 시설분야 등에서 모두 50개 세부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 ■ G2B 전자조달의 발전

지난 1999년 이후 추진해온 G2B 전자조달체제를 더욱 보완하여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고객관리시스템(e-CRM)을 도입하고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개발해 수요기관에는 업체 평가자료와 계약이행에 관한 정보 등을, 조달업체에는 품목별 또는 공종별 신규입찰 정보 등을 인터넷, 이메일, 자동팩스, 음성핸드폰 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 G2B가 보유하고 있는 입찰, 계약, 보증, 상품 정보 등을 각 기관별 내부시스템과 연계도록 해 조달정보의 공동활용도를 높이고 그 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업체별 신인도나 실적정보 등 계약심사자료에 대해서도 자동관리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업



무가 처리되도록 한다.

G2B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물품목록정보도 현재의 35만 개에서 40만 개까지 확대하는 한편 조달관련 전자문서의 국가표준화를 추진한다.

### ■ 안전·품질증시 조달 구현

과도한 저가낙찰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고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원을 늘려 배치하며 시공 전 과정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등 공사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준비작업을 마친다.

이와 함께 단가계약이나 복수계약품목을 확대하고 현재 2개에 머물고 있는 품질검사기관을 13개까지 확대하는 등 전문시험기관 대행검사체계를 확대하며 품질심사항목을 설정하고 품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수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 조달업무 전문화·효율화

그동안은 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을 해왔으나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장가격에 근접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실공사비 가격 적용을 확대하고 원가계산시에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등 각종 경비율을 공사유형이나 규모를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며 가격조사 주기를 단축한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재료비, 노무비, 노무량 산출기준을 DB화하는 한편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른 기관이나 업체와 이를 공동으로 이용한다.

저가심의제의 도입 효과를 분석해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도록 관련협의를 조속히 시행하고, 특히 PQ제도는 전설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개선한다.

기본적인 PQ제도 개선방향은 업체간에 공사수주 의 기회균등을 확보하면서도 우수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항목 및 가산평가를 조정, 변별력을 높이고 시공물의 완성도 등 공사품질 평가요소를 도입하는 동시에 획일적인 PQ기준을 공종과 규모별로 세분화해 업체의 전문성과 특화를 유도하게 된다.

턴키제도는 공사규모나 난이도에 따라 설계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중을 차등화하고 설계심의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며 조사의 강화와 함께 동일유형의 공사가 특정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담합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제도를 보완한다.

보훈 및 복지단체간의 수의계약 구매요청 물품에 대한 공정한 구매기준을 마련해 2년마다 업체에 대한 실사를 하고 수의계약평점(85점) 제도를 운영하도록 이미 상반기 중 제도를 보완한다.

특히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100억원 미만의 중·소형공사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평점을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와 동일하게 현행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늦어도 다음달까지 제도를 개선하고 단기간에 완료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경영상태평가(10점)를 기술사항평가로 대체하는 등 수의계약을 최대한 축소 운영한다.

통합 운용되던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PQ기준을 분리 운용하도록 이미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 정부정책 지원역할 제고

지방업체와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관로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친환경 구매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수요의 원자재 비축규모를 확대해 안정적인 물량과 가격으로 공급하며 국가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물품관리기법을 개선한다.

### ■ 투명하고 열린 조달구현

고객창구 단일화를 위해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이어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구축하고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4시간 이내로 행정용품을 제공하는 등 고객중심의 조달체제를 갖추고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며 관·산·학 및 해외기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민과 관심대상인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 ■ 업무효율증진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여 계약이나 원가계산업무심의회를 운영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업무를 수행하며 용역구매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한다.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별 정원총량제를 실시하는 한편 서기관과 사무관의 실무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전문인력을 확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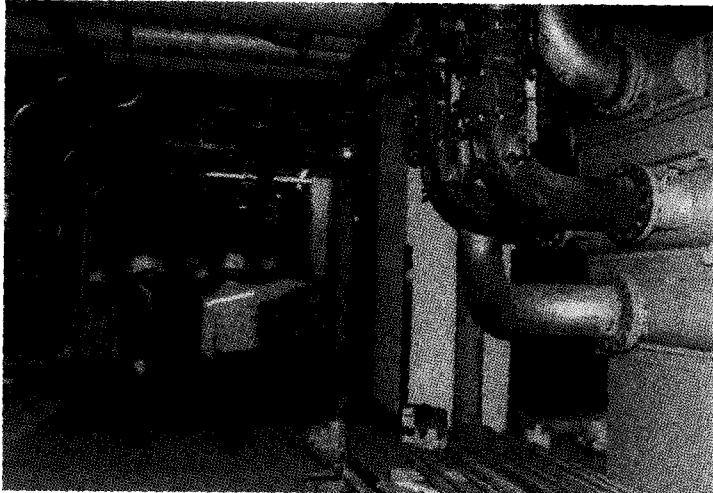
조달서비스 개선 효과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사후관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결과를 확인·점검하는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그 이행여부와 사후개선 효과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시정명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행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과정금 부과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시정명령은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주로 해왔으나, 그 이행여부와 사후개선 효과에 대한 점검이 없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공급물량을 축소시키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이나 수수료를 차별해 거래하는 경우 그 가격 등을 어떻게 조정해

거래하는지 등을 확인·점검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들이 공동판매기구를 설치하여 경쟁을 하지 않고 공판기구를 통해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공판기구의 해체여부 등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사후에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거나 공정거래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령하는 등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 스스로 시정 노력을 촉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3·4분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 노동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 】

7월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가 50억 원 이상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등으로 확대되어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또 의무가입대상 사업주가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퇴

직 외에 만 60세가 될 경우  
우도 퇴직공제금을 수령  
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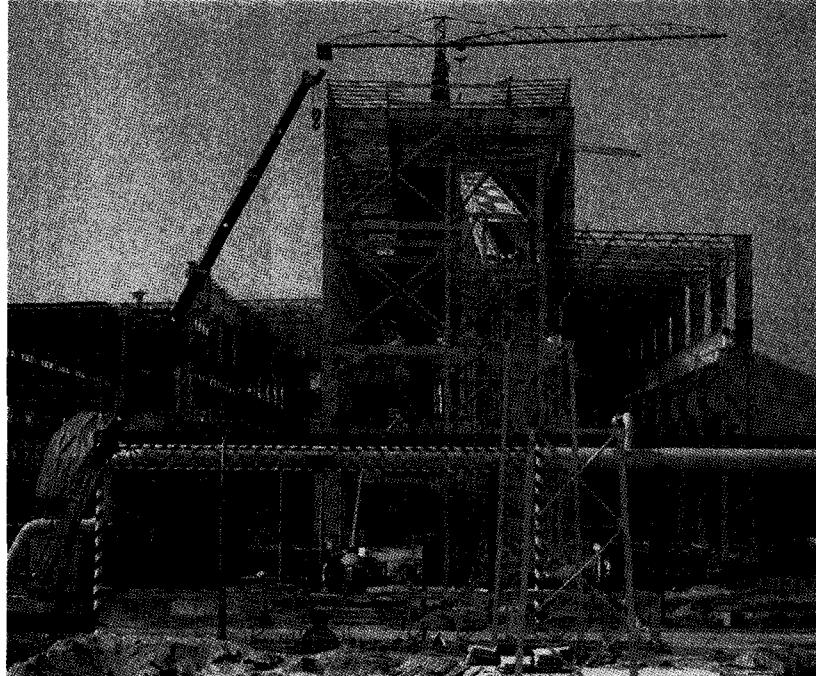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6월 중 마무리짓  
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공제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  
다.

노동부는 현재 건설산  
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와 500  
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공사로 되어 있는 의무가입  
대상공사의 범위를 50억원 이상 전기공사와 정보통  
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으로 확대 실  
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발주기관은 이를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퇴직공  
제제도 가입비용을 공사원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야 한다.

또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와 300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공사로 가입대상을 대  
폭 늘리기로 하였다.

특히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제부금 납부와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에 명시토록 했으며, 하도급 공사금액이 20억원 이  
상인 경우는 원수급인 대신 하수급인을 퇴직공제의  
무가입사업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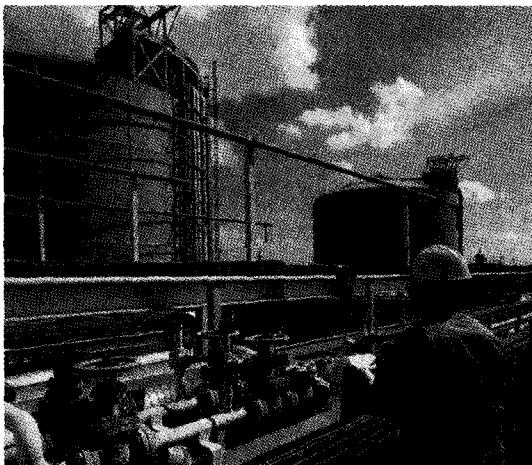
노동부는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가입대상 사업주가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사업주의 법령 위  
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퇴직공제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건설근  
로자의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퇴직공제부금  
을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달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건  
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한해 공제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1998년 1월부터 도입되어 시  
행되고 있는 것으로 작년 말 현재 1천218억원의 공  
제금을 수납하여 9천523명에게 94억원이 지급되  
었다.

# 〔재정경제부,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땐 제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장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되며 공동수급체에서도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이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회계통첩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시달하였다.

회계통첩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자본참여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

수급체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구성원의 탈퇴로 시공 내용이 변경될 때는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과 대가지급 등 공동도급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였다.

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정경제부가 이처럼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이행과 관련한 회계통첩을 만들어 관계기관에 시달한 것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건설분야 부실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건설현장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자본참여만 하는 등 실제로는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공동도급계약은 시공능력과 실적, 기술 등의 상호보완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도록 해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